

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6. 7.>

**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** (제9조제6항 관련)

종류	수거량	비 고
가. 농산물 ○ 곡류·콩 종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○ 채소류 ○ 과실류 ○ 인삼류 등 고가(高價)의 시료	1 ~ 3kg  1 ~ 3kg  3 ~ 5kg  500g	1) “수거량”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. 2)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에서 수거하여야 한다. 다만,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(시료, 포장 등 단위)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.
나. 수산물 ○ 자연산 ○ 양식산 ○ 가공품	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.	3) 채소류(엽채류 등)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. 4) 인삼류 등 고가의 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.
다. 농지, 어장, 용수, 자재	2 ~ 5kg  (L)	5) 토양, 용수, 자재의 경우는 검사방법 등에서 요구하는 중량(용량)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.